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



0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?

1.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(19년 귀속 총급여 기준 연 2,080만원 *) 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는 대출

※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연 1,243만원

▷ 상환유예 중에도 이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상환관리 필요!

2. 대출내역 및 유예이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

- 경로안내: [재단 홈페이지/모바일앱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 ▶ 대출내역]

※ 이자는 대출내역 메뉴에서 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이자 확인하기” 버튼 클릭

Check point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경제적 곤란자 상환유예

•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생은 4년, 실직·폐업·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2년까지 상환유예 가능(국세청 홈페이지 www.icl.go.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)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율상환제도

• 전년도 자발적 상환금액을 올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이용 가능

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

•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제공

※ 국세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icl.go.kr)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FAQ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2 주요 신고의무

1. 채무자신고 (정기신고/상시신고)

▶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채무자신고 잊지 마세요!(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3분이면 완료)

● 정기신고: 매년 12월 한 달동안 본인(배우자 포함)의 주소, 직장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학자금대출 잔액(상환유예이자)를 확인

※ 단, 군복무·해외여행·질병으로 정기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상시 신고 가능

● 상시신고: 주소 또는 직장 변경, 소득 발생 등 변경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

● 경로안내: [재단 홈페이지/모바일앱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▶ 채무자신고]

2. 해외이주

●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,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하거나 전액 상환 불가능 시 연대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필요

- 경로안내: [재단 홈페이지/모바일앱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▶ 해외이주/유학신고]

● 연대보증인 입보: [재단 홈페이지 ▶ 고객센터 ▶ 먼저확인해요 ▶ 자료실 ▶ “연대보증인 입보 양식” 게시글]

● 분할상환약정: [재단 홈페이지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 ▶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전환약정 신청]

3. 유학신고

● 6개월 이상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연대보증인 입보 필요

- 경로안내: [재단 홈페이지/모바일앱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▶ 해외이주/유학신고]

● 유학연장신고: 해외이주/유학신고변경신청서 이메일 제출(icl@kosaf.go.kr)

- 경로안내: [재단 홈페이지 ▶ 고객센터 ▶ 먼저확인해요 ▶ 자료실 ▶ “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” 게시글]

● 귀국신고: 출입국증명서 업로드

- 경로안내: [재단 홈페이지/모바일앱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▶ 해외이주/유학신고 신고내역 ▶ 비교란 “내역조회 및 귀국신고”]

03 장기 미상환자

1.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(자발적상환 포함)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

- 경로안내: [재단 홈페이지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▶ 장기미상환자 ▶ 장기미상환자 현황]

2. 장기 미상환자 지정 시 국세청에서 소득·재산조사(배우자 포함) 후 조사결과에 따른 의무상환액 부과 및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 가능

3. 소명방법: ①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 5% 이상을 상환하거나 ② 졸업일자 오류 및 현재 대학교 재학 중(대학원, 해외대학 제외) 또는 ③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국세청을 통해 소명할 경우 재산조사 중지 가능
- 재단 경로안내: [재단 홈페이지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▶ 장기미상환자 ▶ 장기미상환자 소명신청]
- 국세청 경로안내: [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 ▶ 대출자 ▶ 장기미상환자]

0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

1.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, 본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재단을 통해 상환

- [국세청]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·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**의무적 상환**
- 경로안내: [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 ▶ 대출자 ▶ 대출및상환내역/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/취업후 학자금상환 납부]

| 소득종류 | 상환방식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근로소득, 연말정산 사업소득, 연금소득 | 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방법과 채무자가 미리 1년분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 |
| 퇴직소득 | 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|
| 종합소득, 양도소득, 상속·증여소득 | 국세청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|

- [재단]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원리금 자발적 상환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회성 중도상환 | <p>[재단 홈페이지 / 모바일 앱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 ▶ 중도상환]</p> <p>① 출금계좌 확인(신규 계좌 등록 가능) 또는 가상계좌 선택 ② 상환방식(일부상환/전액상환) 선택 ③ (원금/원리금상환) 선택 후 상환금액 입력 ④ '상환하기' 버튼 클릭(등록된 출금계좌에서 즉시출금 되거나 가상계좌에 직접 납부) ※ 당일 19시까지만 상환 가능하며, 가상계좌 입금내역은 상환처리까지 1일 소요</p> |
| 매월 자동이체 | <p>(본인명의 계좌) [재단 홈페이지 / 모바일 앱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 ▶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체약정등록]에서 ①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선택 ② 이체일자, 이체금액,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신청</p> <p>(타인명의 계좌) [재단 홈페이지 ▶ 고객센터 ▶ 자료실 ▶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등록 및 변경신청서]에서 ① 게시글에 포함된 첨부파일 모두 작성 ② 채무자 본인 및 이체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 (1800-3905) 또는 우편 송부</p> <p>※ 팩스 또는 우편 송부가 어려울 경우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 방문</p> |

※ 자동출금 시 통장의 잔액이 고객님의 설정한 이체금액보다 적을 경우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.
(은행별 출금시간이 상이하므로 자동이체계좌에 납입일 17시까지 원리금 입금 필요)

05 문의처



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, 해외이주·유학 관련
홈페이지 www.kosaf.go.kr ☎ 1599-2000 (내선 4번)



의무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관련
홈페이지 www.icl.go.kr ☎ 126 (내선 1-4번)



※ 핸드폰번호, 집주소, 이메일주소 변경 시 www.kosaf.go.kr에서 개인정보 수정바랍니다.
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상환과 관련된 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